

● 제319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2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이종배 의원 발의 】

의안번호 802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이종배 의원(찬성 37명)

나. 제안일 : 2023. 5. 30.

다. 회부일 : 2023. 6. 5.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자립준비청년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신설을 통해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8

호~제13호).

- 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의 2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2023.6.8.~6.12.) 결과 : 의견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조례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2 주요사항 검토

#### □ 정의 규정(안 제2조제5호 신설)

- 본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5호1)의 자립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2호2)의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이 이용하는 시설

1)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을 하나의 용어로 정의하기 위함임.

- 다만 동 조례안의 상위법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상위법령에는 자립준비청년시설에 대한 별도의 용어 정의가 부재한바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이 하나의 통합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지원사업(안 제6조제8호~제12호 신설등)

- 현행 조례 제6조에서 각호로 규정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은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제1호), 주거공간 및 임대료 지원(제2호), 학업유지비 지원 및 인턴십 체험 등(제3호), 자립준비청년 퇴소 이후 원스톱 일상 교육 지원(제4호), 심리상담서비스(제7호)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등에게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개정안 제6조에 신설된 자립 지원 사업 내용>

안 제6조	지원 사업명	사업내용
8. 자립준비청년시설 체험, 이용 지원 및 홍보 사업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자립지원시설 포함	▪ 사업대상 : 자립지원시설 3개소 ▪ 지원내용 : 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9.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멘토-멘티 결연	▪ 지원대상 : (예비)자립준비청년 및 선배 멘토 ▪ 지원내용 : 멘토-멘티 활동 지원

안 제6조	지원 사업명	사업내용
		(멘토단 풀 구성, 활동비 지원)
10.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현재 미추진 : 향후 추진 예정	
11. 자립준비청년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자립지원시설 포함	▪ 사업대상 : 안전위험 및 노후된 아동 복지시설 ▪ 지원내용 : 증·개축, 개·보수 등 지원
12.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실시	▪ 사업대상 : 자립지원전담기관 1개소 ▪ 지원내용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실시

- 안 제6조제9호의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 자립준비청년 및 선배 멘토를 대상으로 멘토-멘티 활동을 기지원하고 있고, 안 제6조제11호의 자립준비청년 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역시 안전위험 및 노후된 아동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추진 사업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안 제6조제10호로 신설된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3)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같은 청년 세대인 자립준비청년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 다만 현행 조례 제9조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안 제9조의2에서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안 제6조제12호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은 중복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안 제9조의2 신설)

- 안 제9조의2는 시장으로 하여금 현행 조례 제9조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준하는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9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준하는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현행 조례 제9조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9조의24)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아동복지법」 제16조5) 및 제16조의36)

4)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

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 강화 및 자립준비청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임.

- 반면 퇴소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립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바 본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현재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는 퇴소청소년을 포함한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7)에 따른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고

---

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6)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있음.

- 한편 현행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등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해 5년간 사례관리를 하는 반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퇴소청소년은 1년간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 대상간의 자립 준비 지원과 서비스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 퇴소청소년에게도 자립준비지원전담기관에 준하는 자립지원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확대함과 아울러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퇴소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립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립준비청년과 퇴소청소년 간의 자립 및 자립 준비 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등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음.

문 의 처
-------

김종훈 입법조사관 (02-2180-8148)
--------------------------